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2006. 5. 24

### (1) 건축법 개정 (2005. 5. 12 개정)

- 1) 건축법 제7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1995.1부터 삭제되어 오다가 2005. 11. 12일 다시 제정
- 2) 건축법 제2조의 1항 10호(대수선 명시) 및 10호의2(리모델링 명시) 건축법 제2조의 2항 (건물의 용도)이 개정 등.
- 3) 최상위법인 건축법이 상기 내용(요약)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2006. 5. 12부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 것입니다.

### (2) 건축법 시행령 (2006. 5. 12 개정)

- 1) 새로 도입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절차(신설) → 제10조 (상위법인 건축법 제7조의 신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2)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조정) → 제14조

### (3) 건축법 시행규칙 (우리회 회원 관련 부분) (2006. 5. 12 개정)

- 1) 제2조의 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로 한정)
- 2)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 별표2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서 구조도(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 건축법시행령 32조) 추가 → 첨부-1 참조  
- 표시사항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3) 제16조(사용승인신청) :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도서 개정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설계변경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4) 건축법시행령 중 구조설계자의 구조도면 날인 관련 (2005.7.18. 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5.10.20〉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설비분야 사항) <개정 2000.6.27, 2005.7.18>

③ (토질분야 사항) <개정 2005.7.18, 2005.10.20>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 (5)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교부 고시 제2006 - 148호) 중에서 2006. 5. 19. 개정사항 요약

2.1 시특별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변경됨.

- 1종시설물(공동주택 제외)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 참고 : 정기점검은 준공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준공 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함.)

2.2 정밀점검시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해야 함.

2.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 작성

(1) 작성요령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는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C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추가사항.

- 측정과정, 재료시험 과정, 작업사진 (동영상)
-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점검에 참여한 전체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3)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추가사항

- 현황사진 · 동영상
-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동영상
- 참여기술진 현황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전체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NOTE** : 안전진단에 대한 지침이 그동안 매우 구체화되었고 수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또한 상세한 내용의 분량이 매우 많으므로 회원들께서는 건교부홈페이지 에 접속하시어 관련화일을 다운로드하시어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moct.go.kr>) 법령 > 고시 > 2006. 5. 19.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첨부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1996.1.18, 1999.5.11, 2001.9.28, 2006.5.12>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건축계획서                 | 임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요(위치·대지면적등)</li> <li>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li> <li>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li> <li>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li> <li>5. 주차장규모</li> <li>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li> <li>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li> </ol> |
| 배치도                   | 임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척 및 방위</li> <li>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li> <li>3. 대지의 종·횡단면도</li> <li>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li> <li>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li> <li>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li> </ol>   |
| 평면도                   | 임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li> <li>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li> <li>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li> <li>4. 복도 및 계단의 위치</li> <li>5. 승강기의 위치</li> </ol>  |
| 입면도                   | 임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면이상의 입면계획</li> <li>2. 외부마감재료</li> </ol>   |
| 단면도                   | 임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횡 단면도</li> <li>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li> </ol>  |
| 구조도<br>(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 | 임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li> <li>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li> </ol>  |
| 시방서                   | 임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li> <li>2. 흙막이공법 및 도면</li> </ol>   |
| 실내마감도                 | 임의     |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 임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 관련 설비  |
| 건축설비도                 | 임의     |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임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li> <li>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3. 단면상세</li> <li>4. 옹벽구조</li> </ol>  |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관계법령개정(안)

| 법령                    | 현행   | 변경안   | 비고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     | [별표 3]<br>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관련)   | [별표 3]<br>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 관련)<br>모든 감리사에서, 학, 경력자 폐지, 수석 감리사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로 한정  | 감리분야에서 학 경력자 폐지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br>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 기술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br>②(생략)  |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br>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 기술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br>②(생략)   | 책임기술자는 기술사가 적합할 것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2]<br>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책임기술자의자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관련]  | [별표2]<br>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책임기술자의자격 [제7조관련]<br>학, 경력자 전면 폐지하고,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에서는 건축 또는 토목관련 기술사가 책임기술자가 되고,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기술사가 책임기술자가 되도록 개정   | 안전진단은 기술사가 전문가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3]<br>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11조관련) 중 기술인력 가. 다음의 기술인력 2인 이상(토목·건축분야의 인력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br>(1)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br>(2)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br>(3)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br>(4)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br>나.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3인 이상(토목·건축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br>다. 다음의 기술인력 3인 이상<br>(1) 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br>(2)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br>(3)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br>(4)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br>(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있는 자 | [별표3]<br>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11조관련) 중 기술인력 가. 다음의 기술인력 2인 이상(토목·건축분야의 인력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br>(1)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br>(2) (삭제)<br>(3) (삭제)<br>(4) 삭제<br>나.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5인 이상(토목·건축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br>다. (삭제) | 안전진단은 기술사가 전문가임    |